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99. 8. 9)에 따라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 개정안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 체계를 구축코자 함.

2.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마련(안 제5조)
-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서 제출기일 연장 (안 제6조)
-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규정 삭제 (안 제9조)
- 납부기한 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미납시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안 제14조)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신청절차 마련 (안 제15조)

3.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9. 8. 9 개정되고 환경부 개정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부 조항을 순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능률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1. 6. 27부터 동년 7. 16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하는 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제19조로 구성되어 전면 개정 요구된 안으로서 제2조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있어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에서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 수분량을 40%미만으로 정의하였으며,

제6조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주민편익차원에서 완화하였고,

제9조 중 공동주택에 대해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악취등 심각한 민원문제로 삭제하고,

제10조 중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용기에 담아 운반토록 하고 세척이나 소독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가산금 규정을 삽입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수수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시 투명성을 위해 제15조 부과액 조정신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개정준칙안을 통보 받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의 조례 역시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행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일부 완화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